

의안번호	제3101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01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3)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4)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16228(2026. 4. 9.)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80호
- 가) 예고기간: 2026. 4. 2.~2026. 4. 2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제출 1건

입법 예고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 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 설> <신 설>	제6조(지급대상) ----- ----- ----- --. 1. ----- ----- 따라 고성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 ----- 결혼 이민자로서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고성군에 체류 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의견 반영 -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 적이고 세부적 명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을 마 려하고, 결혼이민자 영주 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 하여 민생지원금 사업 추진 시 업무의 명료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불임

4. 본 문: 불임과 같음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 위기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1항

나. 비용발생 요인: 민생지원금 지급

다. 소요예산: 14,200,000천 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2026. 4. 1.기준 고성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사업규모: 총 14,200,000천 원

- 민생지원금: 47,100명×300천 원 = 14,130,000천 원

- 발행비용: 선불카드 47,100매×1천 원 = 47,100천 원

- 운영비: 보조인력,장비임차,홍보비 등×1식 = 20,000천 원

나. 추계의 결과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구분	세출	14,200,000	-	-	-	-	14,200,000
	군비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재원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14,200,000	-	-	-	-	14,200,000
조달	기 타	-	-	-	-	-	-
	소 계	14,200,000	-	-	-	-	14,200,000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주 열

□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